

제5조(유효기간)

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며,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(약정내용의 변경 및 해지)

‘서울시’와 ‘더존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부 혹은 전부를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 또는 조례 등 법적구속력이 인정되는 규정의 변경으로 계속적인 업무 협약이 어려운 경우
2. ‘서울시’와 ‘더존’이 문서로 상호 합의한 경우

제7조(보안 등)

‘서울시’와 ‘더존’은 협력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·간접적으로 확보한 상대방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

1.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신의·성실을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.
2.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7월 5일



서울특별시장

박원순을 대리하여
재무국장

하철승하

DOUZONE

대표이사

김용우를 대리하여
EBP사업본부장

지용구

지용구